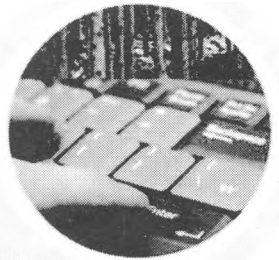


2012

계약심사사례집

(2011. 7 ~ 2012. 6)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CONTENTS

제1장 계약심사제도

1. 계약심사제도 개요	5
2. 주요 심사내용	6
3. 계약심사 성과	7
4.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11
5. 심사요청서류 및 심사절차	12
6. 분야별 주요검토사항	13

제2장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공사분야	43
2. 용역분야	154
3. 물품구매 분야	175

부 록

1.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85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196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46
4.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271

제1장 계약심사제도

Contents

1. 계약심사제도 개요
2. 주요 심사내용
3. 계약심사 성과
4.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5. 심사요청서류 및 심사절차
6. 분야별 주요검토사항

제1장 계약심사제도

1. 계약심사제도 개요

1.1 계약심사제도 개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원가심사 부서에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지 확인, 창의적 공법도입 등을 통해 적정 원가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발주부서의 설계능력을 향상하는 제도, 특히 계약심사 결과는 회계부서의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1.2 계약심사제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 광주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3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¹⁾

- 대상기관
 - 시 본청의 과·담당관,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의회사무처, 자치구, 시 지방공기업, 시 출연(50%이상)기관

1) 부록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전문 참조

○ 심사내용 및 대상사업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1.4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²⁾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지방계약법에 따른 설계변경(E/S,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과 건설 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및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2.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2) 부록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참조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의 가격적용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

3. 계약심사 성과

- 지난 2008.7.23일 1과 4담당 22명으로 계약심사과(심사전담 : 3담당 11명) 설치, 동년 9월 1일부터 업무개시
- 2012. 6월말 현재 총 1,579건(1,081,862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87,103 백만원(8.1%)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재투자

3.1 지금까지 계약심사 실적

〈총괄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579	1,081,862	△87,103	994,752	8.1%
2008.9 ~ 12	113	96,366	△11,435	84,931	11.9%
2009.1 ~ 12	556	378,573	△26,167	352,406	6.9%
2010.1 ~ 12	410	304,659	△25,899	278,760	8.5%
2011.1 ~ 12	303	164,154	△13,266	150,887	8.1%
2012.1 ~ 6	197	138,110	△10,336	127,768	7.5%

3.2 분야별 심사실적

〈공사분야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208	968,296	△80,154	888,142	8.5%
2008.9 ~ 12	86	90,293	△11,075	79,218	12.3%
2009.1 ~ 12	418	323,708	△23,458	300,250	7.2%
2010.1 ~ 12	318	284,951	△24,542	260,409	8.6%
2011.1 ~ 12	231	145,586	△11,920	133,666	8.2%
2012.1 ~ 6	155	123,758	△ 9,159	114,599	7.4%

〈용역분야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72	84,289	△4,781	79,508	5.7%
2008.9 ~ 12	11	3,993	△ 243	3,750	6.1%
2009.1 ~ 12	78	47,902	△2,150	45,752	4.5%
2010.1 ~ 12	26	9,090	△ 486	8,604	5.3%
2011.1 ~ 12	34	12,246	△ 856	11,390	7.0%
2012.1 ~ 6	23	11,058	△1,047	10,012	9.5%

〈물품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99	29,268	△2,165	27,103	7.4%
2008.9 ~ 12	16	2,081	△ 117	1,964	5.6%
2009.1 ~ 12	60	6,963	△ 559	6,404	8.0%
2010.1 ~ 12	66	10,618	△ 871	9,747	8.2%
2011.1 ~ 6	38	6,322	△ 491	5,831	7.8%
2012.1 ~ 6	19	3,284	△ 127	3,157	3.9%

3.3 기관별 심사실적

〈본청 및 사업소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949	611,675	△42,036	569,639	6.9%
2008.9 ~ 12	69	46,109	△ 2,372	43,737	5.1%
2009.1 ~ 12	354	235,566	△14,344	221,222	6.1%
2010.1 ~ 12	232	207,389	△16,911	190,478	8.2%
2011.1 ~ 12	167	71,321	△ 5,440	65,881	7.6%
2012.1 ~ 6	127	51,290	△ 2,969	48,321	5.8%

〈자치구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475	237,492	△21,308	216,184	9.6%
2008.9 ~ 12	31	13,186	△ 1,234	11,952	9.4%
2009.1 ~ 12	134	54,073	△ 4,672	49,401	8.6%
2010.1 ~ 12	147	74,425	△ 7,662	66,763	10.3%
2011.1 ~ 12	110	57,082	△ 4,582	52,500	8.0%
2012.1 ~ 6	53	38,726	△ 3,158	35,568	8.2%

〈공사·공단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55	232,684	△23,754	208,930	10.2%
2008.9 ~ 12	13	37,071	△ 7,829	29,242	21.1%
2009.1 ~ 12	68	88,934	△ 7,150	81,784	8.0%
2010.1 ~ 12	31	22,844	△ 1,325	21,519	5.8%
2011.1 ~ 12	26	35,751	△ 3,245	32,506	9.1%
2012.1 ~ 6	17	48,084	△ 4,205	43,879	8.7%

4.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4.1. 탄력적인 원가심사제 운영

○ 개요

계약심사 대상기관에서 심사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서도의 작성과정에서 공정 및 노무비 누락 등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발생분에 대하여 증액을 통한 탄력적 심사로 설계서의 완성도 제고로 공사 중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

○ 운영방법

발주부서의 설계누락부분 및 단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는 타 항목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하고 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액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보

4.2 열린 계약심사제 운영

- 행정포털 내 “계약심사 자료방” 설치·운영
- “계약심사 상담실” 운영 : 1개소 2명 상주
- “계약심사 자료실” 설치·운영 : 1개소 전문서적 등 200여권 비치

4.3 원가분석자문단 운영

- 운영시기 : 필요시('08. 9. 1 ~)
- 구 성 : 10인(위원장 - 감사관)
 - 당 연 직 : 감사관
 - 위 축 직 : 9명(용역분야 2, 건설분야 4, 설비분야 3)

○ 기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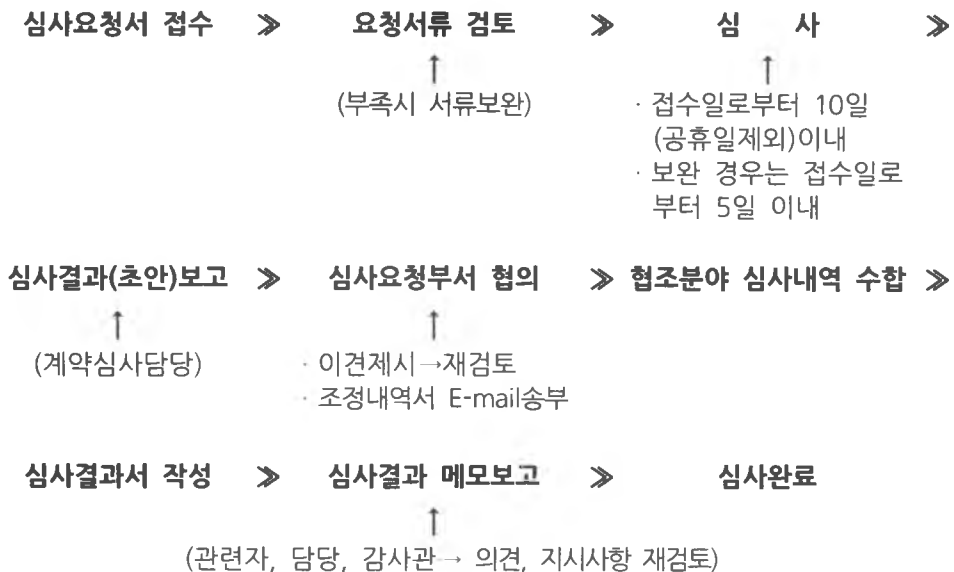
- 건설공사 원가분석시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자문
- 기타 계약심사관련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5. 심사요청서류 및 심사절차

5.1 심사요청서류

- 분야별 심사요청서는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별지 제1호부터 별지 7호까지의 서식
- 심사요청 첨부서류는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별지 제1호부터 별지 7호까지의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5.1 심사절차



6. 분야별 주요검토사항

6.1 공사분야

6.1.1 공사의 분류 및 개념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라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으로 분류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기타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아래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건설공사 등

6.1.2 공사심사 개요

심사요청(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예정가격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확인, 소요자재에 대한 단가 재조사, 불필요한 공종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함

6.1.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 각종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해양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설계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해양부도로공사 발간 설계지침
- 시·군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 조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립지리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지식경제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 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 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4대 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적산기준, 공공기관적산, 견적기준

6.1.4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 공사분야 단계별(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등) 주요검토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원가계산서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원가계산 작성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방식 정적여부(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예규 '11.09.14 제374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각종 제경비요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제경비율 조정 계수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노동부 고시 4대 보험료 적용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관리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 산업안전관리 계산시 <재료비(관급포함)+직노>의 합계액이 관급비 제외 공급가 1.2배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적용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타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내역서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 계상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포함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시공시 필요하지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타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일위대가서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실적공사비 적용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표준품셈 적용	○ 재료 및 누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여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내용 반영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라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 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광설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타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자료 · 적용공법에 타당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단가조사서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 적정 여부
	○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적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 제조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여부
기타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 장비가격 적용의 적정성, 기계손료 적용 적정성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 적용 적정성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조달구매단가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시중 물품단가와 비교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확인
시중자재단가	○ 시중물가자료 활용 · 유동물가, 거래가격 등 · 2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 처리
견적단가	○ 견적단가 확인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 장비가격 확인 ·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확인, 수입장비는 환율적용장비가격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장비적용 손료 결정

6.2 용역분야

6.2.1 용역의 개념 및 분류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6.2.2 심사 개요

심사요청(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반영 시 소요자재에 대한 단가 재조사, 설계내역서상 불일치사항 및 오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함

6.2.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조달청 표준용역 기준(www.pps.go.kr)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 각종 고시 공고 등 원가산정 공표자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측량용역대가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문화재청)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6.2.4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용역의 특성파악 및 내용검토〉

○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토 내용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 학술연구용역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부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 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적정여부(2% 이내)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비율 부과여부 ○ 기타 타당성 심의결과(조건) 이행여부 등

○ 일반용역

항 목	검토 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단금 등의 적정산정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여부, 정보통신용역사업의 경우 제경비, 기술료 등 제비율의 적정여부 ○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산출내역서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 현장여건에 맞는 품셈적용여부 ○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여부
단가적용 오류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중복적용여부
	○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 ○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여부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	○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 재료 및 노무량 적용내용 확인(예 : 품셈개정에 따른 과다계상)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롤 적용 등 오류 여부
실 시공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타	○ 해당 용역과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토 내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 견적이 적용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적용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 적정 여부
	○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적확성	○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한 여부
	○ 주연료 및 잡재료, 조정된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작업량 산정	○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공사 등 수량 발생원과 물량 일치 여부
	○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 산출여부
기타	○ 해당 용역과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6.2.5 분야별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기준

- 학술연구용역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경비 등) 용역
- 유물발굴조사 용역
- 정보통신 용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개발규모 또는 투입인력에 의한 산정방법)

〈학술연구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지휘, 감독, 결론 도출자(대학부교수수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연 구 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조교수 수준)	
	연 구 보 조 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대학조교 수준)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국내의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유 인 물 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포함)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전 산 처 리 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참조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
	감 가 상 각 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 사 비 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③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운	영업이익 (광주발전연구원 등 비영리단체 제외)	⑤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제4장제4절
⑦ 이 운 합 산 원 가		(⑤+⑥)	
⑧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⑦의 10%	
총 용 역 비		(⑦+⑧)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규 칙
① 재 료 비	유류대	경유, 휘발유 등 연료유	수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잡품 등	주연료비의 정해진 요율	주연료의 %	"
	소 계			
② 노 무 비	운전기사	운반차량 운전자	인원*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보통인부	상차등 필요시 인부	인원*단가	"
	중기운전자	백호등 중기 운전자	인원*단가	"
	소 계			
③ 경 비	기계경비	기계손료, 감가상각비 등	산출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폐기물 처리비	종류별, 성상별 구분 적용	수량*단가	"
	기타소요경비	기계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산출가	"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⑥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⑧이윤합산원가			(⑥+⑦)	
⑨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용역비			(⑧+⑨)	

※ 필요 항목만 계상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경비 등) 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규 조
① 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 수량×단가	
	소 계			
② 인건비	기본급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 노임단가×월 평균근무일수	근로기준법43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연장근로시간×1.5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휴일근로시간×1.5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야간근로시간×1.5	-
	연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 15일/년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8시간×15일÷12월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상 여 금		· 통상임금 ×400%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장5절
	퇴직충당금	계속근로연수 1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년30일분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③ 경비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공시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산재보험료		· (기본급+제수당+상여금+식대) × 공시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
	복리후생비	피복비	·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안전화		
		식비지원금		
		교통비		
	사업소세	종업원(50명이상)급여총액의0.5/100	· 인건비 × 0.5%	지방세법 제10조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
	감가상각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 (장비금액·잔존액)×내용연수상각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 계			
④ 순 원 가			(①+②+③)	
⑤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제4장5절
⑥ 일반관리비 산원가			(④+⑤)	
⑦ 이 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 이내	-
⑧ 이 윤 합 산 원 가			(⑥+⑦)	
⑨ 부 가 가 치 세		면세업자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⑧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총 용 역 비			(⑨+⑩)	

〈유물발굴조사 용역〉

구 분			내 용	산출 기준	관련 근거		
수용역원가	① 노무비	직접인건비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 - 주휴수당(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인원×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4조	
		소 계					
		② 경비	직접경비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국내여비만 인정)	인원×회수×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5조
			현장운영비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수송비, 사무실 설치비, 수도광열비, 연료비, 수선비, 임차비, 주재비, 기타 운영비 등)	수량×단가	"	
			조사재료비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	"	
	위탁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		
	회의비		자문회 등 각종 회의비용	"	"		
	유물정리비		유물 정리 및 분석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위탁비, 임차료, 자연과학분석비, 기타 유물정리비 등)	"	" (반드시 계상)		
	보고서 간행비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사진제작비, 인쇄비, 발송비, 전산매체 제작비, 자료수집비)	"	" (반드시 계상)		
	소 계						
	③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임직원 인건비 및 간접경비 일체)	직접인건비의 120%~1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6조		
	④ 학술료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	직접인건비+제 경비 10~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7조		
	소 계						
	⑤총 원 가			①+②+③+④			
	⑥부 가 가 치 세			면세업체는 제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⑤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총 용 역 비			⑤+⑥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1-67호 2011.3.14)

〈정보통신 용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소요인원”으로 계상 ○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 단가 적용(별표)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 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기준 및 자격기준
직 접 경 비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 여 비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사용료)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량비 - 시험조사비(토질·재료 등) -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 급료 및 운영비)	실비조사 계상
제 경 비	○ 직접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직접인건비)*110~120%계상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기 술 료	○ 개발·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 대가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계상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제 세 액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율 적용
총 원 가	위 합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는 제외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 2011. 4. 27)

〈소프트웨어사업(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

○ 소프트웨어 개발비 = 개발원가(보정후)+이윤+직접경비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개발원가	○ 보정후 개발원가= 보정전 발원가 × 보정계수 ○ 보정전 개발원가=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Σ(해당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 기능점수 산정(데이터기능+트랜잭션기능 점수) - 데이터기능점수 = Σ(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Σ(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 트랜잭션기능점수 = Σ(외부입력별 가중치)+ Σ(외부출력별 가중치)+ Σ(외부조회별 가중치) ○ 보정계수=(규모 × 어플리케이션 유형 × 언어 × 품질 및 특성)	○ 평균복잡도 가중치 - 내부논리파일 : 7.5 - 외부연계파일 : 5.4 - 외부입력 : 4.0 - 외부출력 : 5.2 - 외부조회 : 3.0 ○ 사업별 공정별 세부산출방법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규정된 기준에 의함
직접경비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 산출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선투자 후정산 사업의 지급이자 - 여비 -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 - 자료조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기자재시험비 - 인쇄, 청사진비 - 모형제작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기타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 S/W Tool 사용료	○ 정확한 내역 제시 요함
이 윤	○ 개발원가 × 25%이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가가치세	해당 시 10%	
합 계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투입인력에 의한 산정방법)〉

○ 사업대가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 투입인력 수 × 투입기간 × 등급별 인건비 단가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함	○ 산정방식은 M/M (Man-Months)방식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직접 경비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산출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선투자 후정산 사업의 지급이자 - 여비 -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 - 자료조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기자재시험비 - 인쇄 청사진비 - 모형제작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S/W Tool 사용료 - 기타 직접 필요한 비용	○ 엔지니어링사업 사업대가의 기준 준용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자의 행정 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손해배상보험료는 제외)
기 술 료	○ 개발, 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 × 기술요율 ○ 기술요율 : 20% ~ 40%	
총 원 가	합 계	
부가가치세	총원가 × 부가가치세율(10%)	
합 계	총원가 + 부가가치세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6.3 물품구매

6.3.1 물품의 개념 및 분류

물품은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함

- 제 조 : 물품을 별도의 주문에 의해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
- 구 매 :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
- 인쇄물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

6.3.2 구매심사 개요

심사요청(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구매원가에 대하여 사양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반영 시 소요자재에 대한 단가 재조사, 내역서상 불일치 사항 및 오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함

○ 제 조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물품제조를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 완제품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제외)등 물품 구매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를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 인쇄물·기획편집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

6.3.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등
-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기획재정부 허가업체 조사지 :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6.3.4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제조 계약심사〉

항 목	검토 내용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 거래실례가격 또는 전문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구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원가계산서 검토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구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계상

〈표 계속〉

항 목	검토 내용
원가계산서 검토	· 작업설·부산물 등 : 발생재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적용함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 공사, 제조부문으로 분하여 각각의 노임 적용 -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직접(제조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제조 25%이내)

〈물품(완제품) 계약심사〉

항 목	검토 내용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 거래실례가격 또는 전문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구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심사대상 물품명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 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인쇄물 계약심사〉

항 목	검토 내용
인쇄물 규격 산정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용지단가 산정	○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의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가 적용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산정	○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필름출력비 인쇄판대 산전	○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 여부
인쇄료 산정	○ 할증(두꺼운 종이, 얇은 종이, 바탕인쇄, 별책인쇄 증), 감산 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료 산정	○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기타산정 오류검토	○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여 옅색인쇄로 산출한 경우에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요율 조정	○ 옅색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0%, 이윤 20% 적용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산정하지 않음

6.3.5 인쇄물 원가계산방법

- 조달청에서 2011.5.31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업체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책정이 폐지되었음.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구 분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동일(유사)한 구매(계약) 사례가 있는 경우	○ 최근 구매(계약) 사례건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 -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활용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조사 실시 ○ 3개월 이내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판단 후 결정

6.3.6 구매(제조) 원가산출 기준

○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한 가격,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공무원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견적서 등)

○ 원가계산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하는 원가를 계산하여 적용(재정부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감정가격

위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건물, 불용품 매각 등에 이용

○ 수입품 구매

외화표시원가(CIF), 통관비,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 개설료 포함

6.3.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일반관리비율(아래 율을 초과하지 못함)

-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 섬유·의복·가죽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 그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 이윤율(아래 율을 초과하지 못함)

- 제조구매 : 100분의 25
-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제2장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Contents

1. 공사분야 계약심사
2. 용역분야 계약심사
3. 물품구매 계약심사

제2장 분야별 계약심사사례

1 공사분야

00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관, 압송관설치, 배수설비 80가구, 소형오수펌프장 1개소
- 사 업 비 : 1,390,8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390,830	1,092,730		△298,100	△298,100	- 21.43

2.2 주요내용

- 공법변경
 - 일부구간 흙막이 변경(지하수위 등을 분석 시트파일을 조립식 간이 흙막이로 변경)

○ 수량조정

- 시트파일 규격 및 간격 조정(구조계산 재 시행)
- 조립식 가설합숙소 제외(시가지 공사로 불필요)
- 가설실험실 제외 (소규모 공사로 사무실과 통합 운영 토록 조정)
- 일부 자재대(시중 거래가격 중 최저가) 및 작업효율(현장여건 반영) 조정 등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토·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로설치 D=200~600, L=1.0km, 오수처리시설 60톤/일
- 사 업 비 : 929,33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929,336	898,581		△30,755	△30,755	- 3.83

2.2 주요내용

2.2.1 토목분야

- 적용 품 변경
 - 조립식 맨홀 설치 품을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 콘크리트 구멍뚫기 품을 콘크리트 벽체 두께에 맞게 조정
- 수량 조정
 - 어스앵커용 여유장, 부착저항장, 근입장 조정(구조계산 재 실시)
 - 안전율 과다 적용 부분을 적정 안전율을 적용토록 조정

- 비탈면 어스앵커용 크로러드릴 천공 삭제(지반 완전굴착 전 천공토록 공정 개선)

○ 단가산출

- H-Pile 천공품을 업체 제시품에서 건설표준품셈의 유사품으로 적용

2.2.2 기계설비 분야

○ 일위대가

- 시운전기간 조정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적용)

○ 단가조정

- 스테인레스강관, UV자외선소독기 등 시중거래가격 등 최저가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구조계산 및 공정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토·기·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처리시설 1개소(100톤/일), 오수관 6,671m,
- 사 업 비 : 3,089,86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089,866	2,904,036		△185,830	△185,830	- 6.01

2.2 주요내용

2.2.1 토목분야

- 설계내역
 - 시험비(의뢰시험) 제경비 삭제(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누락분 반영, 프라임코팅 재료 조정(MC 1 → RSC-3)
- 대가조정
 - 흙관부설 및 접합 품 조정(모르타르접합 → 고무링 접합)
 - 하수관 수밀시험의 공구손료(노무비의 2% → 인력품의 2%) 및 감소모품비(노무비의 3% → 주재료비의 3%) 조정

○ 단가산출

- 레미콘 소운반 적하임 삭제,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단가 산출오류 조정
- SHEET-PILE 항타 중 용접공중(용접기, 용접재료비, 용접공) 삭제
- 버팀보 설치 일 설치 수량 조정(11.71본 → 14.05본)

2.2.2 기계설비 분야

○ 대가조정

- 우수처리시설설치품 조정 및 자외선 소독기(수로형, 100m³/일) 설치품 조정

○ 자재단가

- 수중그라인더펌프 및 자외선 소독장치(수로형, 100m³/일) 단가조정(실거래가)

2.2.3 전기설비 분야

○ 자재단가

- 국선단자함(가격정보 단가조사 반영)
- TM/TC, 유량계, 유량계 LOP 단가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00아파트주변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도 설치 176m, 준설 185m, 도로포장 1,014m²
- 사 업 비 : 119,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19,000	105,800		△13,200	△13,200	- 11.1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소로 아스팔트 포장 가복구 물량 삭제 및 건설폐기물 수량 산출 오류 조정
- 단가산출, 자재단가
 - 맨홀설치 거푸집 형식 조정(합판4회 → 유로폼), 하수관내 CCTV 조사일수 작업량 조정
 - 현장투입장비(백호, 덤프 등) 규격 변경, 작업효율, 버킷계수 등 조정
 - 흙관부설 및 접합 방식 조정(모르타르 접합 → 고무링 접합)
 - 유류, 치출, 결속선, 도로표지용 페인트 등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강 살리기 0공구(00지역) 사업(설계변경)

1 사업개요

- 주요변경 : ○○댐 원수공급, 편의시설·조형물 설치 등
- 사 업 비 : 69,593,72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9,593,729	68,985,729		△608,000	△608,000	- 0.87

2.2 주요내용

○ 설계내역

- 아스팔트 덧씌우기량 조정(가복구 구간 조정 전구간 → 4차로이상(교통량이 많은 구간))
- 흙관 및 블록운반비 삭제 및 설계변경 실비 삭제

○ 대가조정

- SHEET-PILE 공(천공) - CASING 설치 및 철거, 강관말뚝 천공 삭제
- 벽돌 바닥깔기(평깔기 → 보도용 블록포장으로 조정)

- 오염정화처리비(아연) 단가 조정(비교 견적가 적용)
- 단가조정
 - 숏크리트 타설 및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단가 산출오류 조정
 -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표준품셈 단가로 조정(소형고압 블록포장, 아스팔트 포장 깨기, 투수콘크리트 포장)
 - 표준품셈단가 실적공사비로 조정(자전거주의, 추락주의, 자전거통행금지 표지 등)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병원~00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29.2a
- 사 업 비 : 330,54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30,545	284,232		△46,313	△46,313	- 14.0

2.2 주요내용

- 일위대가
 - 블록설치품을 업체 제시품을 적용 설계하여 과다 산출됨에 따라 표준품셈의 유사품 적용
 - 유로폼 대가를 건설표준품셈 품으로 오류 수정
- 단가산출
 - 철근콘크리트 깨기 장비변경(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 대형브레이커)
 - 아스팔트 포장품 중 살수시간 변경 20분 ⇒ 10분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공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513m, B=20m
- 사 업 비 : 2,034,2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034,220	1,781,930		△252,290	△252,290	- 12.40

2.2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 산출오류 조정
 - (재료비 + 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 2.48%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48 × 1.2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삭제
 - 전문건설업으로 발주예정이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삭제
- 설계내역
 - 공당 코아채취 단가조정(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시험종목 및 수수료)

○ 대가조정

- 벤치플룸관설치 기구손료 조정(건설장비의 잡재료비 및 손료는 건설기계경비 산정에서 별도 제시하므로, 크레인의 손료는 제외)
- 종배수관부설(D600mm, D1000mm) 품 조정(모르타르접합 → 고무링 접합)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구 00권 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67m, B=8.0m
- 사 업 비 : 159,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9,000	152,852	-	△6,148	△6,148	- 3.87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Cm= 20sec(135°) → Cm= 18sec(90°))
- 대가조정
 - 석면 해체(오염구역제거) 품 조정 및 PE원형거푸집 벽체(Φ1200,Φ900) 설치 품 조정
 - 건설폐기물처리비, 운반비, 폐스레트처리 및 운반비(석면) 조정(비교견적)

○ 자재단가

- 콘테이너 사무실, 주철맨홀 뚜껑 등 13개 품목 단가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파크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1공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음터널설치 L=290m, H=5.0m
- 사업비 : 5,265,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265,000	4,593,565		△671,607	△671,607	- 12.76

2.2 주요내용

- 내역서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 단가조정
 - 아스팔트 포장,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깨기 작업량 조정
 - 운반속도 및 적재·적하 품 조정(현장여건 반영)
- 대가조정
 - 고장력볼트조임 및 Fillet 용접 품 적용 오류 조정

- 기동세우기 및 천장세우기 장비 조정(트럭탑재형크레인5톤→크fp인(타이어 10톤)
- 방음터널 구조용강관 구조용파이프 등 재료할증 조정(할증 7~10% → 할증 5%)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고가교 방음터널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터널형 방음벽설치 L=250m, B=8m H=3.5m
- 사 업 비 : 1,278,3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278,320	1,234,460		△43,860	△43,860	- 3.43

2.2 주요내용

- 내역서
 - H-Beam 구멍뚫기 6,448공 → 삭제(잡철물제작 품 적용으로 제외)
 - 콘크리트벽 구멍뚫기 0공 → 1,000공(방음벽지주 고정을 위한 구조물 구멍 뚫기 1경간 8공)
 - 방음벽 지주 및 보조 H-Beam(지붕부)설치 잡철물설치품 → 철골공사(철골 세우기)품

○ 대가조정

- 벤딩 및 도금 적용 단가 조정(m당 단가를 ton당 단가로 착오 정정)
- 단면복구용 몰탈도포 품 및 강관비계 매기 품 적용오류 조정

○ 자재단가

- 방음벽 지주 등 3개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로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L=1,250m, 500경간
- 사업비 : 103,67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3,676	94,764		△8,912	△8,912	- 8.6

2.2 주요내용

- 내역서
 - 대로변 작업 교통안전신호수 추가
- 단가조정
 - 가드레일 품, 발전기 Q=40 경간, 비트손료 계산 조정, 배치인원 특별인부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적정성,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 문화소통길 00워킹로드 조성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워킹로드 L=1,685m, B=3.0m 보행데크 L=418m, B=2.0m
- 사 업 비 : 696,14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96,140	655,070		△41,070	△41,070	- 5.90

2.2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 산출오류 조정
 - (재료비 + 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 2.48%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48 × 1.2배
- 수량산출
 - 보행데크 일반구간과 계단구간 중복구간 공제 누락분 조정
- 대가조정, 자재단가 조정
 - 보행데크 목제가공 및 설치 “보통구조-상” → “마루널갈기”품으로 조정

- 잡철물설치 품(복잡 → 간단) 조정 및 기존 수목보호틀 제거 품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0초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콘 인력 포설 A = 638m²,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A = 1,302m², 보도조성 L=102m, 방호울타리 설치 85경간, 교통안전표지판 16EA 등
- 사업비 : 126,48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26,483	124,427		△5,056	△5,056	- 4.0

2.2 주요내용

- 내역 및 일위대가 조정
 - 중기운반 횡수 및 운반거리 조정(현장여건 반영),
 - 보차도 경계석 설치품 조정(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아스팔트 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 작업 능력 조정(Q=4.6m³/hr→5.9m³/hr)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Cm= 20sec(135°)→ Cm= 18sec(90°)]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구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차선도색(과속방지턱도색, 노면도색) 203.63㎡
미끄럼방지포장 1,071㎡, 교통안전표지판 184개소 등
- 사 업 비 : 206,168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06,168	184,756		△21,412	△21,412	- 10.38

2.2 주요내용

- 단가산출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Cm= 20sec(135°) → Cm= 18sec(90°)]
- 대가조정, 자재단가 조정
 - 노인보호구역 대형지주 설치 및 부착용 장비 규격 변경 (크레인 트럭 10Ton → 5Ton)
 - 노인보호구역 대형표지 부착 작업량 조정(1일 6개 → 8개)

· 대형표지판, 횡지주등 15품목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00지구 도시개발구역(1블럭)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관 D=250~2,200mm, L=962m, 방음벽 L=248m, H=10m, 도로개설 L=68.7m, B=15m,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 사 업 비 : 3,444,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444,000	3,320,700		△123,300	△123,300	- 3.58

2.2 주요내용

- 내역서
 - 파고라, 조합놀이대, 등 의자 및 평 의자 설치비 삭제(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단가조정
 - 덤프트럭 평균주행속도 조정(적재 및 공차)

○ 대가조정

- 유리섬유복합관부설접합 및 식생옹벽블록설치 품 조정(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점토블럭포장 품 중 모래부설 삭제
- 치장블럭쌓기 및 마감블럭쌓기 작업반장 품 삭제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처리비 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293m, B=4.0~10.0m,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 사 업 비 : 2,266,9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266,900	2,072,479		△194,421	△194,421	- 8.58

2.2 주요내용

- 수량산출
 - 소형고압블럭, 잔디블럭 할증 조정(8.0% → 4.0%)
 - L형옹벽 철근 단위수량산출 오류 수정. 아스콘 표층 수량 중복 산출 오류 조정
- 단가조정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Cm= 20sec(135°) → Cm= 18sec(90°)]

- 법면보호공(평떼) 고치자재 삭제, 시공말뚝설치 → 토공규준틀로 변경

○ 대가조정

- 레미콘타설(펌프카 - 무근, 철근구조물) 품 적용 오류 수정
- 우수관 접합 및 부설 품 조정, 배수판설치, 이경T형관 접합 및 PE차수벽관 절단 품 조정
- 근원직경에 의한 굴취 및 관목류에 의한 식재 품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68m, B=15m
- 사 업 비 : 1,681,971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81,971	1,484,533		△197,483	△197,483	- 11.7

2.2 주요내용

- 내역서
 - 현장 여건상 불필요한 일부 오수관 삭제(지형 특성 고려)
- 단가산출
 - 지정폐기물(스레이트) 해체, 사전조사, 처리 및 운반비 조정(비교견적)
 - L형옹벽 철근가공 품 조정 : 현장가공(복잡) → 공장가공(보통)
 - L형옹벽 배수구조물 형식 변경 : 잡석채움 → 드레인보드로 조정 등

○ 자재단가

- 조립식맨홀, 보차도경계석, 도로표지용 페인트 등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중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주차장 설치 6면(2,086m²)
- 사업비 : 335,72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46,665	335,723		△10,942	△10,942	- 3.2

2.2 주요내용

- 적용 일위대가 변경
 - 스톤형잔디블록 포장(업체 견적가) ⇒ 대형블록 포장(품셈단가) 적용
 - 되메우기 다짐시 램머 효율 조정, U형 잔디블록 운반비 삭제(현장 차상도로 하차비만 반영)
- 자재단가 조정
 - 유로폼 부품단가, 융착식페인트, 프로판가스, 유리알 등(시중가격 정보지 중 최저가)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종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근린공원 조성사업(토·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조성 11,024m²
- 사 업 비 : 2,116,968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390,830	1,092,730		△298,100	△298,100	- 21.43

2.2 주요내용

2.2.1 토목분야

- 적용 품 조정
 - U형측구 품 적용 개선(잡철물 제작설치 ⇒ 잡철물 설치)
 - 나무식재, 줄떼, 평떼 조정(건설표준 품셈 적용)
 - 목재데크 공중 조정
 - 목재가공 및 설치 ⇒ 마루널 깔기
 - 잡철물 제작설치 ⇒ 잡철물 설치

○ 자재단가 조정

- 경유, 휘발유, 화산석, 컨테이너 사무실 단가조정(시중가격 정보지 중 최저가)

2.2.2 전기설비 분야

○ 적용 품 조정

- 전력케이블, 보안등제어반 기초, 감전보호기 설치, LED보안등 설치품 누락 추가반영

○ 자재단가 조정

- 전기 관급자재(보안등주, LED보안등) 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전통역사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축물 철거 8개동, 폐기물처리 6,885.7톤
- 사 업 비 : 365,65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65,652	322,012		△43,640	△43,640	- 11.9

2.2 주요내용

- 적용 품 조정
 - 웬스(가설방호벽) 손료를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적용
 - 기존가옥 철거 시간당 작업량 조정(콘크리트슬래브조와 조적조의 비율을 감안 조정)
 -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단가 조정(건설폐기물 조사단가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폐기물처리,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공원 외1개소 급경사지 정비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위험 경사면 보강 2개소
- 사 업 비 : 903,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903,000	896,130		△6,870	△6,870	- 0.8

2.2 주요내용

- 수량조정
 - 절개면 보호공 앵커핀 및 착지핀 천공품 삭제 (비탈면이 풍화토사로 천공 불 필요)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폐기물처리,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00시장 내부통로 포장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덧씌우기 63.77a, 도막형바닥제 63.77a, 경계석1,038m
- 사 업 비 : 579,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79,000	549,966		△29,034	△29,034	- 5.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일부 중복계상 품 삭제(사토운반 중 적재, 포장깨기 중 들어내기)
- 단가산출
 - 기계포장 가능구간 덧씌우기 공법 조정 (인력소규모 → 기계)
 - 좌판경계(도로경계석) 규격 조정,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단가 조정(감사관실 방침 단가)

○ 자재단가

- 유류, 레미콘, 도로경계석 등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철도 00호선 레일 연마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레일연마 L=13.5km(곡선부 및 역 구내)
- 사 업 비 : 164,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4,000	157,300		△6,700	△6,700	- 4.1

2.2 주요내용

- 적용 품(야간할증) 조정
 - 레일연마 야간작업 할증율 제외
 - ※ (재)한국국민경제연구원의“연마차에의한 레일연마 품셈산정”에 관한 예정
원가 산출보고서에 의거 레일연마 작업은 지하에서 행해짐에 따라 야간작업량
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일반품셈에 의거 야간작업 할증율을 적
용하는 것은 중복적용(해당분야 연구원 유선확인)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구 2011년 사방사업(계류보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슭막이 193m, 바닥막이 6개소, 대공 1개소
- 사 업 비 : 181,81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81,810	152,650		△29,160	△29,160	- 16.04

2.2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 산출오류 조정
 - (재료비 + 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 2.48%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48 × 1.2배
- 내 역 서
 - 전석(굴석석)운반 및 콘테이너 운반 삭제(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굴림석 자재 (사급자재 → 관급자재, 원활한 자재구입)

○ 단가조정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C_m = 20\text{sec}(135^\circ) \rightarrow C_m = 18\text{sec}(90^\circ)$)
- 지장목제거(벌목조재 및 뿌리제거) 단가 조정 1,497원 → 1,406원 (숲가꾸기 설계감리 지침)

○ 대가조정

- 가설사무실(콘테이너) 설치 품 적용 오류 수정 및 강관비계 설치 기간 조정 (6월 → 3월)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마을 외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송수관로 325m, 배수관로 2,050m, 가정관로 876m
- 사 업 비 : 435,86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35,866	417,970		△17,896	△17,896	- 4.11

2.2 주요내용

- 설계내역
 - 플랜지 접합수량 조정(제수밸브 부설품에 플랜지 접합품이 포함됨에 따른 조정)
- 수량산출
 - 송수관로와 배수관로 일부구간 중복에 따른 공제 누락분 조정
- 단가 및 대가조정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되메우기 다짐장비 작업효율 조정 및 노면파쇄기 절삭폭 조정

· 관로테이프 설치 품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상수도시설기준 적용상이 여부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교~00입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관 부설 D=100mm, L=1,045m
- 사 업 비 : 167,79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7,790	162,940		△4,850	△4,850	- 2.89

2.2 주요내용

- 수량산출
 - 직접재료비 수량 이기 오류 조정, 콘크리트 포장파괴 중복산출 오류 조정
- 단가조정
 - 폐콘크리트 처리 공중에 폐아스콘 처리 단가를 적용함에 따른 오류 조정
- 자재단가
 - 환율 및 부직포 단가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상수도시설기준 적용상이 여부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도로확장 구간 내 상수도관 무단수 연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무단수연결 D=1,500mm, N=1개소, D=1,200mm, N=2개소,
- 사업비 : 698,7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98,730	572,400		△126,330	△126,330	- 18.1

2.2 주요내용

- 일위대가
 - 천공작업 중 불필요한 트럭크레인 삭제
- 단가산출
 - 무단수차단기 손료 계수를 업체제시 수치에서 유사수치로 변경 적용
 - 천공기, 칩제거기, 플러깅 설치 장비사용시간을 업체제시시간에서 유사품인 제수
변부설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협의 조정(무게 및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함)

○ 자재단가

- 마감플러그, 상수도용피팅외 12종 단가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상수도시설기준 적용상이 여부
- 공법선정의 적정성(장비투입)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콘크리트 포장 2,658m, U형개거 264m, 벤치플룸관 510m, 호안블럭 60m, 홈관 176m. 맨홀 4개소, 문비 2개소
- 사업비 : 428,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28,000	410,599		△17,401	△17,401	- 4.07

2.2 주요내용

- 단가산출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Cm= 20sec(135°) → Cm= 18sec(90°))
- 대가조정, 자재단가
 - 노인보호구역 대형지주 설치 및 부착용 장비 규격 변경 (크레인 트럭 10Ton → 5Ton)
 - 노인보호구역 대형표지 부착 작업량 조정, 대형표지판, 횡지주등 15품목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장비투입)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농촌체험휴양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L형옹벽(H 1.7~2.5m) L=261m, 농로포장 L=173m, B=2.3m
- 사 업 비 : 123,16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23,162	114,778		△8,384	△8,384	- 6.81

2.2 주요내용

- 단가산출
 - 되메우기 사이클타임 및 램머작업효율조정, 철근현장가공 → 공장가공으로 조정
 - 레미콘 타설(철근) 작업능력 조정(23.5㎥/hr → 28.3㎥/hr)
- 자재단가
 - 환율조정, 보조기총용 골자, 철선, 부직포 등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동 00제 지표수보강 개발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당그라우팅 L=145m (136공)
- 사 업 비 : 156,05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6,052	124,914		△31,138	△31,138	- 19.95

2.2 주요내용

- 일위대가
 - 찬공(토사, 풍화암)품 조정(시중 적용품을 유사품인 어스앵커 천공품으로 적용)
- 수량산출, 자재단가 조정
 - 찬공부분 1일 작업량 조정(시중 적용품을 유사품인 어스앵커 천공품으로 적용)
 - 유류, 환율, 치를 등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저수지 제당 보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당보강 그라우팅 65공
- 사 업 비 : 130,96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30,967	116,709	5,780	△20,038	△14,258	- 10.8

2.2 주요내용

- 일위대가 조정
 - 천공(토사, 연암) 및 반응액 주입공대가(업체단가→건설표준품셈 단가로 변경)
- 수량 조정
 - 주입량의 기준이 되는 공극을 조정(투수계수를 활용하여 공극을 계산)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 혁신도시 조경공사(1,2,3공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공구 :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6개소 등
- 2공구 : 문화공원 1개소, 연결녹지 13개소, 완충녹지 1개소
- 3공구 : 문화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연결녹지 6개소 등

○ 사 업 비 : 29,281,947천원(도급 + 관급)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9,281,947	26,074,130		△3,207,817	△3,207,817	- 10.95
8,269,600	7,620,745		648,855	648,855	1공구
10,863,422	9,505,441		1,357,981	1,357,981	2공구
10,148,925	8,947,944		1,200,981	1,200,981	3공구

2.2 주요내용

○ 내역서

- 부지조성공사와 포장중복된 연결녹지 포장공 삭제

○ 일위대가

- 자연석기계놓기 → 전석쌓기 50% 반영
- 목재 가공 및 설치 → 보통구조 하 일괄조정
- 잡철물 제작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
- 데크상판설치 → 마루널 깔기
- 초화류 식재환경 : 보통 → 양호
- 떼심기 식재환경 : 보통 → 양호
- 일위대가 내 작업반장 모두 삭제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등 품 조정
- 인력 잡석다짐 → 콤팩터 다짐
- 인조화강석 포장, 무근콘크리트(소운반삭제)
- 콘크리트 양생비 삭제
- 잡석부설(현장여건 반영 시공방법 조정)
- 거푸집 인건비 할증(30%) 삭제
- 합판거푸집 4회 → 유로폼 벽체폼 적용
- 투수성 포장재의 석분 → 모래 변경
- 기계놓기 → 화강석 디딤돌 포장
- 연못방수공(토사운반, 포설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채취, 채가름, 운반 삭제)
- Con'c다지기 삭제
- 블록깔기(모래포설 및 다짐포함) 일위대가 조정
- 혼합토 및 마사토 부설 품 변경
- 포장하부 보조기층(인력살수품) 삭제
- 보차도 경계석 설치 품 변경 조정
- 알루미늄엣지 설치품 삭제
- 집수정 제작설치를 기성품으로 조정

○ 단가산출

- 진동롤러, 컴팩터(3회, 4회) 작업효율 조정
- 양질토 채취품 조정(인력 20% + 기계 80% → 기계 100%)

- 토사운반 백호 0.7m 작업사이클 조정

○ 자재단가

- 기계경비 기초자료 변경원
- 모래 단가 25,000원 → 18,000원
- 안전난간 A 견적단가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주요공종 중복계상 내역삭제
- 초화류 식재환경 등 여건 조정
- 장비 효율 및 관급자재 수량조정 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로 방음벽 등 벽면녹화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8개소 4,554m, 담쟁이덩굴 13,662본, 송악 13,662본
- 사 업 비 : 137,500천원(도급 + 관급)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37,500	110,900		△26,600	△26,600	- 19.3

2.2 주요내용

- 원가계산서
 - 제경비 요율조정(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일위대가, 자재단가
 - 묘목류 식재 → 초화류 식재, 송악(30cm) : 2,500원 → 2,000원(가격정보)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진입부 쉼터 조성 : 파고라 1개소, 마사토 흙포장 및 수목식재 등
- 탄소저감숲 조성 : 자갈수로, 맹암거, 우드칩 포설 및 수목식재 등
- 유실수원 조성 : 대추나무외 8종 424주 식재
- 벽면녹화 조성 ; 담쟁이 16,600본 식재

○ 사 업 비 : 1,366,000천원(도급 + 관급)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366,000	1,216,460		△149,540	△149,540	- 10.9
1,253,682	1,162,133		△91,549	△91,549	- 7.3(도급)
112,318	54,327		△57,991	△57,991	- 51.6(관급)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식재지 특성을 감안한 맹암거 수량 및 규격조정

- 망암거 수량조정에 따른 쇠석골재 조정

○ 일위대가

- 제12호표, 제22호표, 제37호표 수목지주대 규격변경
- 제25호표, 제26호표, 제27호표 녹화끈, 녹화테이프 제외
- 제41호표 은목서 식재품 조정

○ 단가산출

- 제2호표 순성토운반 중 굴삭기 작업효율 조정
- 제3호표 흙쌓기 중 진동롤러(자주식) 효율 조정
- 제4호표 순성토 중 부지임대료 및 절취+적재비 제외
- 제5호표 마사토 및 쇠석혼합부설 중 다짐기계 변경
- 제6호표 터파기 효율 조정
- 제7호표 잔토처리 효율 조정

○ 관급자재 수량조정

- PE이중벽관(Φ250) 4,350m → 486m
- PE이중벽관(Φ150) 0m → 2,193m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건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1동, 연면적 1,436㎡
- 사 업 비 : 733,76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33,760	722,469		△11,290	△11,290	- 1.54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공량조정

- 에폭시도장 특별인부 삭제(품셈 1242), 수성페인트칠 공정 연마지 제외(바탕 만 들기에 포함)

○ 단가조정(조달청 3자단가, 물가정보 적용)

- 실링재, 세이프강화유리문, 내수합판(1급), FBD판넬, 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플로어링보드, 포천석판재, 폴리싱타일, 스테인레스 강판, 일반구조용 압연강관, 경량형강

○ 수량조정

- 컨테이너 가설사무소삭제 → 동일 대지내 기존건물 활용(2개동 존치), 창호 수량 PD01

2.2.2 기계설비 분야

○ 자재단가 조정(실거래가격)

- 전기온수기 및 전열교환환기장치, 전열교환환기장치(800CMH) 중복계산

○ 자재단가 및 노무비 조정(조달청 가격정보)

- 각형 덕트 제작설치, 스테인레스 덕트 제작설치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문화마을 기념관건립공사(건가토조전소통)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 2층/1동, 지하1~지상1층/1동, 연면적829.96m²
- 사 업 비 : 2,65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650,000	2,541,201		△108,799	△108,799	- 4.11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품셈단가 조정(국토부 실적단가 적용)
 -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및 무근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AL몰딩설치 노무비삭제
- 공량조정
 - 그을림 한식기와 잇기, 그을림 한식기와 내림마루 5단 및 7단

2.2.2 토목·조경 분야

- 적용물 및 공량조정
 - 자연형 잔디블록포장, 화강판석포장(T=100, 부정형, 잔디), 식재환경조성A, 식재환경조성B
 - 치자나무식재, 사철나무식재, 박태기나무식재, 자연석쌓기(조경석쌓기로 조정)

2.2.3 기계설비 분야

- 공량조정
 - 급수급탕배관공사 설치
- 용량조정
 - FRP 부패탱크식 단독정화조
- 단가조정(실거래가, 가격정보)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이동형 리프트, 원적외선 복사페널 등 8종
- 분담금 조정
 - 상수도시설분담금(공사비 및 수수료포함) - 조정수도급수조례 공고 제 1998-46호

2.2.4 전기설비 분야

- 대가조정 및 재료비 할증 조정
 - 외등기초, 피뢰침, 전선관, 케이블, 전선의 재료비 일위대가 및 내역서 중복 반영
- 구성설비 조정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완속충전설비는 전기차 구입시 설치타당)

2.2.5 소방설비 분야

- 단가조정
 - 배관용 탄소강관 5종, 수신기(P형1급5회로) 등 6종

2.2.6 통신설비 분야

- 단가조정
 - 앰프, LCD모니터, 랙 케비넷, CCD카메라, 돔 카메라, UPT 케이블(50P)
- 수량조정
 - 옥외용 칼럼 스피커, 방송장비용 랙 및 랙 패널
- 구성설비 조정
 - CCD카메라(일체형으로 변경-브라켓, 하우징, 렌즈 제외)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00마을회관 건립공사(건·토·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 2층/1동, 연면적 382.34m²
- 사 업 비 : 524,382천원(관급 84,695천원 포함)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24,382	504,046		△20,336	△20,336	- 3.88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표준품셈 및 현장여건 적용
 - 신발장, 특수문자 ⇒ 물품으로 분류 원가계산서상 주요자재로 분류
 - 컨테이너가설사무소 설치 ⇒ 비계공 삭제(현장 설치시 지게차 등 장비활용 설치)
 - 수성페인트칠 공정 연마지 제외 ⇒ 바탕 만들기에 포함 됨
- 수량조정
 - 파일 이음밴드(PHC, A형, 400mm), 각재, 미서기 창틀설치 도장공사(바니쉬칠, 목재면 3회) 등(창호 재료변경 목재→플라스틱)

○ 공법변경

- 옥상 우레탄방수 비노출 → 노출방수로 변경(보호콘크리트 삭제)
- 창호 변경(11개소) : WW(목재단창)+PW(플라스틱) → PW(플라스틱이중창)

○ 단가조정(시설자재 적용)

- 신발장(20인용), 컨테이너하우스, 각재(라왕, 창호), 내수합판(1급), 화강석(포천석), 복층유리(투명, 24mm), 포천석판재(버너, 30mm), 압출발포폴리스틸렌판(30mm, 60mm, 70mm, 75mm), 화장실칸막이(데코판넬 S-20), 실링재(비초산/유리용/창호주위), SST점검구(500×600 자동개폐), 강화유리문, 소철선(어니일링, 4mm), 스테인레스강판(STS304, 1.2mm)

2.2.2 부대토목 분야

○ 대가(공량, 단가)조정

- PVC관 접합부설, 도로 표지용 페인트(용착식), 용착식 프라이머, 프로판가스, 치클

2.2.3 기계설비 분야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단가조정

- 온수저장탱크 및 양변기 등

○ 잡재료비 조정

○ 공량조정

- 장비설치공(주철제보일러 설치 → 경유보일러 설치)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00시장 주차장건립공사(건·토·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 1층 주차장 1동, 연면적 665.95㎡, 주차대수 48대
- 사 업 비 : 768,6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68,670	745,482		△23,188	△23,188	- 3.11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대가조정
 - 에폭시도장(호표 39) 특별인부 삭제(품셈 1242), 텍스해체, 슬레이트해체,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컨테이너 가설창고, 철골세우기, 복합보세우기
- 단가조정
 -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78), 알미늄복합판넬(불소수지), 알미늄편칭판넬, 강화유리문

○ 수량조정

- 컨테이너 가설사무소(6×2.4×2.6m) 삭제 → 동일 대지내 기존건물 활용(2개동 존치)
- 비계설치 및 해체(5.6×9.6×6m/3개월) 설치물량, 공사용가설 울타리(높이 2.4m

2.2.2 부대토목 분야

○ 대가조정

- 라인마킹(실선) 용착식, 라인마킹(문자, 기호) 용착식, 표층 텍코팅, 표층 아스콘포설

○ 단가조정

- 아스팔트(표층용, #78), 도로표지용도로, 도로표지용도로, 도로표지용 도로, 경유, 휘발유

2.2.3 기계설비 분야

○ 단가조정(가격정보)

- 전기온수기 및 전열교환환기장치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중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건·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 3층 1동, 연면적 726.62㎡,
- 사 업 비 : 1,078,80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78,803	1,040,642		△38,160	△38,160	- 3.54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제경비 요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기준 산출금액의 1.2배 이내), 환경보전비(현장여건 감안 산출경비의 50%반영(소규모 공사, 세륜시설 미설치))
- 대가조정
 - AL몰딩 설치, 바탕처리 재료비, 와이어메쉬 깔기 품

○ 단가조정

- 객토, 잔디, 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각관, 강화유리(투명, 8mm), 포천석판재(잔다듬, 30mm), 콘크리트파일(Ø400,9m), SUS점자블럭(300×300×6t), 유류가격

○ 물량 및 공량조정

- 이동식 강관 말비계, 철근가공(현장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현장조립), 카스토퍼
- 콘크리트 칼라스테인 품 조정

2.2.2 기계설비 분야

○ 냉난방기시스템 변경

- 실내기환기덕트형 냉난방기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 단가조정

- 전기온수기(100ℓ), 대변기, 장애인용 양변기, 소변기, 원형세면기, 수도꼭지, 세면대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도서관 건립공사(건·기·전·통)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1,462m²(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
- 사 업 비 : 3,265,45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266,286	3,166,454		△99,831	△99,831	- 3.05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단가 및 운반비 조정
 - 고철, 스테인레스 적용단가 : 최소가 → 최대가
 - 철근공장가공관리비(철근가공품 계약심사 적용개선 방침(감사관실-1841호 2012.2.23)에 따름)
 - 철근운반비(철근 하치장과 가공공장이 인접 부지 위치)
 - 신발장 설치(물품분류로 내역삭제)

○ 관급자재 전환

- 창호(관급, 24종 62개)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자재 수급상황 고려 및 원가절감

2.2.2 기계설비 분야

○ 단가조정

- SMC물탱크(20톤, 보온), 급수가압펌프(인버터, 1.85KW), 배수펌프(수중형, 0.75KW),저장식전기온수기(1,000ℓ), 장애자용소변기(손잡이포함), 세면기(오닉스),

○ 공량조정

- 장애자용양변기(전자 감응식)

2.2.3 전기설비 분야

○ 제경비 요율 및 대관수수료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기준 산출금액의 1.2배 이내)
- 사용전 검사비(안전공사)

○ 공량조정

- 23kV 동심난연케이블 포설(개별포설 → 동시포설)

○ 단가조정

- 경고테이프(300mm), 보안등주,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LED(직사각 55W→50W), LED(정사각 55W→50W), LED(15W, 다운라이트), LED(보안등 73W)

○ 수량 및 규격조정

-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LED조명 55W(직사각, 정사각) → 50W

2.2.4 통신설비 분야

- 제경비 요율 조정
 - 경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
- 단가조정(제3자단가 적용)
 - DVR시스템, 모니터(19",LCD), POWER CON'T(8CH)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공사(건·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본동 등 4개동 2,155m²(도장), 청과동 등 2개동 295m²(비가림), 화장실 2개동 76m²(리모델)
- 사 업 비 : 342,21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42,215	302,912		△39,303	△39,303	- 11.48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수량조정
 - 가설공사 보호막 설치(PE필름)(현장여건 감안 가설 보호막 수량의 50%반영)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말비계(표준품셈 2-6-3 이동식 강관발비계 손율을 공사기간(45일간) 고려 50%적용)
 - 도장공사 바탕만들기(산출면적의 50% → 30%반영, 기존 철재면 녹제거 및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공정 현장여건 감안)

○ 대가조정

- 콘크리트 철거(m당, 철근, 무근), 지붕강판 철거(m당)

○ 단가조정

- 강설(강철,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3종)조사가격 중 최소금액 적용 → 최대 가격 적용

2.2.2 기계설비 분야

○ 공량조정

- 위생기구설치 공량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종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건·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면적 : 591㎡(별동증축 지상2층/1동), 노인복지시설
- 사 업 비 : 613,71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13,712	595,305		△18,406	△18,406	- 3.0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수량조정
 - 강관동바리(수량산출시 바닥면적의 90%로 산출(건축적산하 - 기문당 최산하 저))
 - 규준틀 수량 조정(작업환경 및 현장여건 감안)
- 공법변경
 - 낙하물방지망 및 비계주위 보호막 시설비 삭제
 - 내부비계 → 이동식 강관말비계로 변경(작업환경 및 현장여건 감안(100㎡ 당 1대 반영))

- 되메우고 다지기 : 기계(80%)+인력(20%) → 기계시공
- 대가조정
 - 콘크리트 타설 다짐 인건비 삭제

2.2.2 기계설비 분야

- 수량조정
 - 양변기센서(수세밸브, 양변기센서 8EA를 감하고 양변기 일체형으로 적용)
- 단가조정(제3자단가 및 가격정보 적용)
 - 물탱크(SMC사각형, 9톤, 보온), 양변기(초절수형), 소변기(센서일체, 트랩내장형), 비대, 세면기(마블, 1,300mm)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건·조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944.57m², 지상 3층 1동,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
- 사업비 : 1,477,08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77,085	1,411,357		△65,727	△65,727	- 4.45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공법변경
 - 옥상방수공사(우레탄방수(3mm) 비노출 ⇒ 노출 방수로 변경(무근콘크리트 삭제))
 - 철근가공(현장가공,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철근가공품 계약심사 적용 개선 방침(감사관실-1841호 2012.2.23)에 따름
- 노임 및 운반비조정
 - 콘크리트 타설 다짐(진동기)의 인건비 삭제

- AL몰딩설치의 인건비 삭제
- 벽돌(소형고압블럭) 소 운반비 삭제(건물외부보행로에 사용되는 자재로 소운반 불필요)

○ 수량조정

- 준공 표지판(900×700×100 마천석)

2.2.2 조경 분야

○ 수량, 대가, 공량조정

- 조경수목(이팝나무 11주 → 5주)
- 관목식재 일위대가(단식 품적용 → 군식품 변경)
- 파고라 설치(목조 뼈대설치 품 삭제)

2.2.3 기계설비 분야

○ 공량조정

- 위생기구설치 공량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종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공사(건축)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 1층 열람실 223m², 복도(유아전용방 미니공연장 설치 등)
- 사 업 비 : 144,308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4,308	131,467		△12,840	△12,840	- 8.9

2.2 주요내용

- 제경비 요율 조정
 - 환경보전비(신축공사시 세륜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로 터파기가 없어 제외)
- 내역 및 수량조정
 - 안내데스크, 신발장, 하부장(제작설치) → 물품에 해당하여 단가조정 후 원가 계산서상 사급자재비로 편성
 - 지정벽화 마감(견적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금액이므로 이를 제외금액 내역반영)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말비계(소규모 공사로서 면적협소 등 현장여건 감안)
- 폐기물처리비 조정
 - 운반거리조정(30km→20km) 경비(한국자원건설협회 제공 단가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컨벤션센터 증축공사(건·기·소)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DJ센터증축 1,314.35㎡, 회의실(5실), 경량철골조
- 사 업 비 : 1,879,80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879,806	1,808,632		△71,171	△71,171	- 3.79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제경비 효율 조정
 - 환경보전비(신축공사시 세륜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로 터파기가 없어 제외)
- 단가조정
 - 복층유리(칼라, 24mm, m), 보통합판(1급, 9t, m), 인조대리석(다크, 20mm, m)
- 대가조정
 - 로우더(타이어, 1.34㎡, hr당) 기계조장 인건비 삭제, AL물딩설치, 압면텍스

붙임 설치 인건비 삭제, 연마지 재료비 삭제(바탕만들기), 유리면 흡음판 설치 품 조정

- 식재환경조성(A, B, C, D형)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비 삭제, 수목식재와 중복 계상됨(건설품셈 4-3-3 근원직경에 의한 굴취), 국토부 실적단가(39개) 및 조달청 시장시공가격(29개) 적용

○ 공량 및 폐기물처리비용 조정

- 먹메김(마감분야)(건설표준품셈 20-2-5(샌드위치판넬 설치)에 먹메김 품 포함됨)

○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용 조정

- 폐기물 운반거리(00지역 운반거리 적용)
-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2012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단가 조사보고서에 의함(내부방침)

○ 고재처리가격 조정

- 조사가격 중 최소금액 적용 → 최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 가격 적용)

2.2.2 기계설비 분야

○ 제경비 요율 조정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적용(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제외)

○ 단가조정(가격정보 적용)

- 덕트인라인팬(D550), 각형덕트제작설치(0.5T), 각형덕트제작설치(0.6T), 양변기(초절수형), 소변기(전자감지식), 핸드드라이어(자동), 수건걸이(STS)

○ 자동제어 시운전비 조정

- 시운전비 3,500,000식/원 제외(기계설비 표준품셈 적용)

2.2.3 소방설비 분야

- 제경비 요율 조정
 - 소방공사의 하도급제한 적용(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제외)
- 공량조정
 -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설치공량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수영장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공사(기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집열기 구조물 및 장비설치공사 등 1식
- 사업비 : 503,39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03,393	463,963	-	△39,430	△39,430	- 7.83

2.2 주요내용

- 잡 재료비 조정
 - 잡 재료 전선관의 20% ⇒ 전선관의 15%
- 수량, 단가, 시운전비 조정
 - 레미콘 및 레미콘타설, 자동화설비 프로그램 및 시운전비(재료비 → 노무비)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 수련원 수련시설확충 공사(기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2,081.42㎡, 지하1층/지상3층(중축)
- 사 업 비 : 657,34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97,801	657,342	-	△40,459	△40,459	- 5.80

2.2 주요내용

- 제경비 효율 조정
 - 하도급제한 적용(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제외)
- 수량, 단가조정
 - 룸컨트롤러용전선 및 전선관, 옥외가스배관, 아스콘복구수량, 온수저장탱크단가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 소극장 무대시설물 및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무대기계시설 전선교체, 무대기계시설 자동제어반 (PLC) 설치
- 사업비 : 254,15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7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54,154	239,543		△14,611	△14,611	- 5.75

2.2 주요내용

- 제경비 조정
 -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산출하였으나 관급자재는 별도 설치 품이 반영되었으므로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안전관리비 산출 반영
- 단가조정(가격정보, 시중 실거래단가 적용)
 - 강제전선관, AL 전선덕트, 편케이블, 아연도강판, 무대기계 인할막 설치공사의 운임비 제외, 제어반 단가 산출시 외함이 반영되었음에도 추가 5면을 반영, 제어함 내부 배선

3. 주요 검토사항

- 자동제어반(PLC) 구성 적정성 여부검토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수전설비 1식, 계측제어설비 1식
- 사업비 : 1,425,75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25,759	1,298,368		△127,392	△127,392	- 8.93

2.2 주요내용

- 제경비 조정
 - 간접노무비율(2012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의 산업설비 적용)
 - 관급자재 수배전반 구매설치 직접노무비율 조정(122%→100%)
- 대가조정
 - 케이블(F-CN/CO-W 60mm²/1C(3조), F-CV 185mm²/1C(4조) 설치 동시 설치 품 적용
 - 배전반 현장 설치비 제외(조달청 현장설치도)

○ 단가조정(제3자단가 적용)

- 관구밀폐기, 계측제어설비(TM-Master, WEB Server, 계측기기 시운전비), LED투광등기구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마을~시경계간 도로경사완화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LED 조명(가로등 151본, 통로박스 20개), 제어반 9개소
- 사 업 비 : 76261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62,613	632,101	583	△131,095	△130,512	- 17.11

2.2 주요내용

- 제경비 조정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조정
- 한전공사 부담비용 조정
 - 수전장소감소(2개소)에 따른 부담공사비 감액(통로박스 2개소 및 부채도로 조명 1개 회로구성으로 수전개소 2개소 감소)
- 공법변경
 - 가로등주 규격변경(1차선 도로에 사용되는 가로등주 높이를 12m에서 8m로 변경)

- 농로 보안등주 설치 제외(농로에 설치된 12m 보안등주 13본)
- 공량 및 노무비 조정
 - 실적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변경(압착단자, 풀박스), 강제전선관 설치품 이중 계상 조정, 가로등주 철거품 조정, 부채도로 가로등회로(1개)를 통로박스회로(2개)와 통합함에 따라 노무비 조정, 누락된 설치품 반영(제어반, 전력량계, 경고테이프, 방수형접속함)
- 수량조정
 - 부채도로 가로등회로(1개)를 통로박스회로(2개)와 통합함에 따라 수량조정, 관급자재(가로등주(12m), 가로등주(8m), LED가로등(200W), LED가로등(150W) 수량 조정
- 대가조정
 - 제어반기초(터파기, 되메우기, 합판 거푸집 수량), 양카볼트 설치품) 조정
 - 터파기, 되메우기 기계사용 비율 조정
 - 가로등기초 일위대가 조정(기초 지하매설로 볼트캡 제외)
 - 가로등주 건주 일위대가 조정, 전선관 지지행거 일위대가 조정
- 단가조정(가격정보, 거래가격 적용)
 - 관급자재(가로등주(12m), 가로등주(8m), LED가로등(200W), LED가로등(60W))
 - 각재(외송)자재단가, 지중선용 가설철물(입상관)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반차로 복구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 5, 차량철주 5, 보행철주 17 개소이설
- 사 업 비 : 178,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78,000	166,971	13,756	△24,785	△11,029	- 6.2

2.2 주요내용

- 제경비 조정(2011년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조정
- 공량 및 대가조정
 - 폴리에틸렌(PE) 전선관 설치 품 조정
 - 합판거푸집(4회), 가로등 기초대(증), 가로등주 철거 및 설치, 보행철주 철거 및 설치, 차량철주 설치, 보행철주 설치, LED 신호등(4색) 설치, LED 신호등(2색) 설치,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증), 차량철주기초 설치(증) 등의 일위대가 조정

○ 수량조정

- 전선관 부품(노말밴드) 수량 조정(PE 전선관에 경질비닐노말밴드는 불필요하므로 제외)
- 전선관 부속재(옥외공사로 전관의 15% 제외), 전선관 및 케이블 할증율 조정(수량 감)

○ 단가조정(가격정보, 거래가격 적용)

- PE 전선관, 케이블(F-CV 2C*2.5mm, F-CV 2C*16mm, F-CV 4C*16mm), 신회등맨홀, 직선접속재, 시멘트 등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실전 훈련센터 설치 통신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시장 인테리어 및 패널설치 및 심폐소생체험장 등
설치 5개소, 영상 H/W 및 S/W 설치 1식 등
- 사업비 : 241,21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41,216	218,526		△22,690	△22,690	- 9.41

2.2 주요내용

- 공량조정
 - 장비설치(홍보존, 연기피난체험장, 강당, 응급처치체험장, 화재진압체험장 컨트롤룸)설치공량
- 단가조정(가격정보 적용)
 - STEEL PIPE(16C), STEEL PIPE(22C), STEEL PIPE(28C), 영상장비 인터넷가
격 조사단가 반영(LCD프러젝터(5000ANSI), DLP프러젝터(6000ANSI),
FIXED스크린(액자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카메라 12대, 비디오서버 5대, 앰프 8대, 혼스피커 16대
- 사 업 비 : 119,51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19,515	110,165		△9,350	△9,350	- 7.82

2.2 주요내용

- 제경비 효율 조정
 -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조정
- 공법변경, 공량조정
 - CCTV 피뢰침 설치 개소수 조정, 앰프 설치, 혼스피커 설치, 카메라 폴 설치, 카메라 폴 암 설치, 접지케이블 설치 공량
- 단가조정(제3자단가 적용)
 - UTP케이블(CAT.5E4P), 스피드돔카메라하우징, 빔라이트, 비디오서버, 안내 표지판(폴용)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교통관리시스템 구축(3차) 공사(통)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카메라 19대, 광링크 2대, FTP·터미널서버 8대, 전광판
- 사업비 : 197,91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97,919	174,030		△23,889	△23,889	- 12.07

2.2 주요내용

- 제경비 효율 조정
 - 4대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조정,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제외
- 공량조정, 단가조정
 - FEP 서버 설치, OS/PATCH 설치, 미널서버 설치 공량삭제, FEP서버,터미널서버 시중조사단가 적용, S/W 분석 기능점수,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소프트웨어대가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건립 우선시공 통신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회의실방송설비, CCTV, 출입통제설비, 안내설비 등
- 사 업 비 : 779,35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79,350	754,386		△24,964	△24,964	- 3.2

2.2 주요내용

- 설비조정
 - 회의실 마이크 설비 추가, 케이블, 전선관, 마이크잭 박스 추가
- 단가조정
 - 출입통제 시스템(CARD READER, ELECTRIC LOCKING DEVICE)
 - 출입통제 서버, 출입통제 프로그램
 - 시중경쟁 단가 조사 반영(RACK, LCD 모니터(매입형), 제어기, LCD 소프트웨어)

- 관급 AV 설비(BLUE RAY PLAYER, LCD MONITOR(LCD 22"), 전동 CONTROLLER, PROJECTOR 전동 LIFT(Up Down), COLOR DOME CAMERA)

3. 주요 검토사항

- 소프트웨어대가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수련원 수련시설 확충 통신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 지상3, 통신설비, TV, 전관방송, CCTV설비
- 사 업 비 : 127,55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27,554	121,010		△15,544	△15,544	- 12.18

2.2 주요내용

- 제경비 요율 조정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수량조정, 회선용량조정
 -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접지선 및 부대시설 수량 조정
 - 인입구간 및 구내 통신 UTP케이블(25P) 회선용량 변경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지능형 교통체계 00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개발
- 사 업 비 : 63,96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3,963	58,497		△5,466	△5,466	- 8.54

2.2 주요내용

- 기존프로그램 재개발에 따른 친숙도 수준 조정
- 단가조정
 - 친숙도 조정에 따른 산출금액 재 산정

3. 주요 검토사항

- 소프트웨어 재개발 비용 산정의 적정성

생태지도 종합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비오톱 GIS DB구축, 생태지도 웹GIS개발, 장비도입
- 사 업 비 : 163,646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3,646	160,948		△2,698	△2,698	- 1.65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 수량조정
 - 2011년도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
 - DB, 서버가격, 추가 프로세서 및 전력장치 중복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소프트웨어 재개발 개발비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시중거래가, 견적가 등)의 적정성

00 통합도서관서비스 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서버, OS, DB, 관내도서관시스템연계(12개 도서관)
- 사업비 : 296,565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96,565	294,365		△2,200	△2,200	- 0.74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
 - 서버, OS, 백업장비, 네트워크 장비
- 예산과목 및 입찰공고 의견제시
 - 예산과목 변경(전산개발비 → 자산취득비)
 - 지식경제부 고시번호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공고 시에 명시요구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단가(조달가, 시중거래가, 견적가 등)의 적정성

2

용역분야

00 지구 공공임대 APT 설계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8,931.5㎡, 지하1층, 지상16층 2개동, 전용 44㎡형 180세대
- 사 업 비 : 168,243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8,243	134,595	-	△33,648	△33,648	- 20

2.2 주요내용

- 산출내역 조정
 - 계획설계비 33,648천원(20%) 삭제(기 완료된 성과품을 활용하여 아파트 8개동 중 2개동에 대한 평면변경 용역이므로 중간 및 실시설계비만 반영(80%))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859호, 2009.9.2.)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 감안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00지구 소형공동주택 설계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24,435㎡, 지상15층 5개동, 36㎡·46㎡·49㎡형, 299세대
- 사 업 비 : 842,605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842,605	831,887	-	△10,718	△10,718	- 1.3

2.2 주요내용

- 산출내역 요율 조정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출 오류조정(4.951% ⇒ 4.853%)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859호, 2009.9.2.)

3. 주요 검토사항

- 요율적용 방식 적정여부

00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34m², 연면적 1,155m²(지하1지상4층)
- 사 업 비 : 179,153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79,153	163,723	-	△15,430	△15,430	- 8.61

2.2 주요내용

- 지질조사비 조정
 - 조사수량 : 굴착 깊이 20m → 10m(현장여건 감안 / 지하1층 구조)
- 전문가 자문비 조정
 - 총괄전문가 : 기술사단가→특급기술자
 - 지원전문가 :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 경비 산출용역기간 감안 : 자문회수10회→5회, 자료수집출장10회→3회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 감안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00 임대주택 건립 설계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상무지구 영구임대

· 위 치 : 서구 치평동1166번지(소각장 맞은편)

· 부지면적 : 15,469㎡

· 건립규모 : 18층, 아파트 6개동, 전용 30㎡형, 660세대

- 하남2지구 영구임대

· 위 치 : 광산구 산정동 1052번지

· 부지면적 : 9,736㎡

· 건립규모 : 18층, 아파트 4개동, 전용 30~41㎡형, 540세대

○ 사 업 비 : 1,688,918천 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88,918	1,619,912	-	△69,006	△69,006	- 4.09

2.2 주요내용

- 추정공사비 산정비율 조정(LH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업체 조사사항 반영)
 - 전기, 소방, 통신공사비 비율 : 8.5% → 12%
- 추가 용역비 조정(주민설명회 등 불필요 항목 삭제)
 - 지구단위계획변경(68,420천원 → 58,241천원)

3. 주요 검토사항

- 추정공사비산출 적정여부

00센터 건설사업관리(CM)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18,000㎡, 지하1층, 지상3층 1개동,
- 사 업 비 : 2,131,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131,000	2,006,000	-	△125,000	△125,000	- 5.87

2.2 주요내용

- 인건비 조정
 - 투입감리원 등급조정(조경분야 : 수석감리사 → 감리사)
 - 감리원 투입기간 조정(토목분야 13개월 → 8개월(공사시작 시점, 공사완료시점))
 - ※ 토목공사는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시점과 마무리 포장공사 시점에 투입 필요.
- 제경비 조정
 - 차량운행비 삭제(발주청과 현장거리 15km이상일 경우만 반영(발주청과 현장 간 1km이내))

- ※ 책임감리용역 감리대가 적용개선 방안에 의함 - 종합건설본부 내부 방침(붙임 참조)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 감안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00 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1,500㎡, 지상 3층
- 사 업 비 : 121,92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21,920	119,359	-	△2,561	△2,561	- 2.1

2.2 주요내용

- 추정공사비 조정
 - 2010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조달청)에 의함(1,950천원/㎡)
- 설계비 요율 조정
 - 당초 2종(보통) 중급 → 조정 3종(복잡) 중급

3. 주요 검토사항

- 추정공사비산출 적정여부

00 테니스장 실시설계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3,760㎡ 지상2층, 테니스장 10면, 관람석 3,525석
- 사 업 비 : 1,288,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288,000	1,102,600	-	△185,400	△185,400	- 14.4

2.2 주요내용

- 단계별 업무비율 조정(중간설계업무비율 30%→20%(첨부1 참조))
 - ※ 00국제테니스장(1차분) 조성공사시 기본설계는 일괄 시행(2010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 이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다이빙장으로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과업이 추가됨
- 설계도서 작성구분 조정(중급→기본)
 - 실시설계 도서작성을 상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설계품질 유지

3. 주요 검토사항

- 전차용역 고려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첨부1]

단계별(중간설계) 업무비율 조사내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 제3항
- 건축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2

[별표 2] <개정 2010.8.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일 부 필요여부
건축계획서	임 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배 치 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중·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 × × ×
평 면 도	임 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 ○ ○ ○ ○
입 면 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 ×

〈표 계속〉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일 부 필요여부			
단 면 도	임 의	1. 중·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 ○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 ○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	○	×	×

00 소각장 소각재 위탁운반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소각재(바닥재 및 고형재) 상차·운반처리(21,000톤/년)
- 사업비 : 503,39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9,327	133,053	-	△26,274	△26,274	- 16.49

2.2 주요내용

- 15톤 덤프트럭 타이어 교환비용 제외(잡재료비에 포함)
 - 건설공사 표준품셈[11-8 덤프트럭]운전경비 산정 적용
- 감가상각비 제외(기계손료에 포함)
 - 기계경비의 산정 적용(기계손료=감가상각비+정비비+관리비)

3. 주요 검토사항

- 기계공사 품셈 및 건설공사품셈 적용여부

00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교통정보센터 중앙D/B시스템 및 교통신호장비 일체,
신호제어기 864개소, 전광판 23개소, 교통신호등14,560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232조, 음향신호기 1,062대
- 사업비 : 720,0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20,000	665,019		△54,981	△54,981	- 7.64

2.2 주요내용

- 인건비 조정
 - 교통신호제어(일위2,3호표) 평일주간근무 야간/휴일근무와 중복 주간근무일수 조정
 - 주간근무 일수 조정

○ 제경비 요율 조정

· 직접인건비 조정에 의한 제경비 및 기술료, 부가가치세 감

3. 주요 검토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의한 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00 체육시설 청소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체육시설(내·외부 청소), 골프연습장, 수영장, 빙상장
- 사 업 비 : 395,866(197,933천원/1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95,866	349,445		△46,421	△46,421	- 11.73

2.2 주요내용

- 인건비 조정(근무일수 조정)
월 근무일수 조정(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

3. 주요 검토사항

- 2012년도 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 표준도급비 산출 적정여부

00 수질개선 사업성과 평가모델 구축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수원지 유역 및 저수지 수질모델 구축
- 사 업 비 : 149,65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9,659	140,712		△8,947	△8,947	- 5.98

2.2 주요내용

- 인건비 조정
 - 보조원 인건비 전액 삭감
- 기타경비 및 제경비 조정
 - 서적구입비 삭제, 회의수당 하향, 출장회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 적정여부

민주장년 100년, 지역사회운동사 연구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동학혁명 ~ 현재까지 우리지역 민주·인권·평화 운동사 연구
- 우리지역 사회운동 중심지 자료 발굴, 수집된 자료는 건립예정인 5.18 아카이브에 기증 등

○ 사업비 : 146,2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16,200	384,871		△31,328	△31,328	- 7.52

2.2 주요내용

○ 회의비, 국내여비, 인건비 조정

- 회의비 조정(회의참석 수당 조정 및 기획위원회 수당 삭제)
- 교통비 : 이동 교통편 조정
- 보조원 인건비 전액 삭감

○ 전산처리비 조정

· 토너, 프린터용지 수량조정 등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을 감안한 여비, 인건비 등 산출 적정여부

00동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유적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역사적 가치 조명
 - 미 발굴지역에 대한 발굴계획 수립 등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0,000	97,320		△2,679	△2,679	- 2.7

2.2 주요내용

- 회의비 및 국내여비 조정
 - 회의 참석인원수 조정, 국내여비 출장 회수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을 감안한 여비, 회의비 산출 적정여부

00동 유적 발굴조사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유적 11,266㎡ 발굴조사, 확인된 유구 및 유물의 분포상황도 작성
- 수습유물 세척, 실측, 사진촬영, 유적사진촬영 및 실측도, 측량도 작성 등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00,000	186,772		△13,228	△13,228	- 6.6

2.2 주요내용

○ 인쇄수량, 인건비 단가조정

- 인쇄부수 조정, 일반 및 유물정리 인건비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적정여부 검토확인

3

물품구매 분야

00 센터 건립 통신공사 관급자재 구매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K/4K/3D 디지털 시네마 프로젝터 외 103종 구매
- 사업비 : 1,066,105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66,105	977,898		△68,207	△68,207	- 6.40

2.2 주요내용

- 설비용량 조정
 - 전관방송 비상용 배터리 충전장치 추가(충전기, Battery, Battery Case)

○ 단가조정(실거래가 조사 적용)

- 씨네마 프로젝터, Screen/Frame, 시사실 Screen/Frame, 3D/HD File Server, Draw Curtain, Battery Charge(DC24V), Battery(DC12V 40AH), Battery Case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시중 경쟁단가 조사 반영

00 경보 사이렌 구매설치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경보단말장치 2식, 기타 부대설비 2식
- 사업비 : 79,999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9,999	78,125		△1,874	△1,874	- 2.34

2.2 주요내용

- 공량조정, 단가조정
 - UTP케이블설치, PE전선관설치, 접지선부설설치 공량, 스피커케이블, 장비보관함

3. 주요 검토사항

- 정보통신표준품셈 적용의 적정 여부
-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실거래가 및 가격정보지 조사)

00 품질보고서 인쇄물 제작

1. 사업개요

- 규 격 : 8절, 4도 양면, 2단접지
- 용 지 : 아트지 120g
- 인쇄부수 : 총 540,000부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2,810	27,830		△4,980	△4,980	- 15.1

2.2 주요내용

- 단가 및 할증조정
 - 조판료 조정, 인쇄판대 조정(4판 → 2판), 인쇄료 할증율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여부

00 시약·초자구매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약 67종 119개, 초자 137종 474개
- 사업비 : 85,28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85,281	81,989		△3,292	△3,292	- 3.8

2.2 주요내용

- 자재 단가 적용의 적정성(시중 거래가, 견적가)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실거래가 및 가격정보지 조사)

00 행사용 수목구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목백합 500주
- 사 업 비 : 56,5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6,500	50,000		△6,500	△6,500	- 11.5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거래실례가격 적용)
 - 목백합(H3.5×R8) : 당초 113,000원 → 조정 100,000원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 단가 적용의 적정성(시중 거래가, 전적가)

00센터 보안관제시스템 메모리 등 구매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통합보안로그인 관리 서버 등 4종 메모리
- 사 업 비 : 30,472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0,472	28,024		△2,448	△2,448	- 8.03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
 - 계약심사결과 낮은 단가로 금액수정 요구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실거래가 및 가격정보지 조사)

부 록

Contents

1. 광주광역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2.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4.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1.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광주광역시 규칙 제2874호]
(2012.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처

라. 자치구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구비사업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0.10.15>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신설 2010.10.15>
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0.10.15>
5. 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신설 2010.10.15>
6.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신설 2010.10.15>

7.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신설 2010.10.15>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10.15>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광주광역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여부 검토<개정 2010.10.15>
 2.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등 원가자문<개정 2010.10.15>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0.10.15,2012.5.15>
- ③ 기타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 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수리목적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최초)계약금액	원	(직전) 계약금액	원		
사업 개요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374호
(2011.09.14)]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포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가. 작성절차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나 임대인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1. 기초금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 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내에서 7개, $0\% \sim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2인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1.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 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1. 견적가격

견적가격이라 함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 또는 “나”에 가격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라.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 기관 및 원가검토키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금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라.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나.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간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나”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 “나”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마. “다”의 간접노무비는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바. “마”의 간접노무비는 “라”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1. 공사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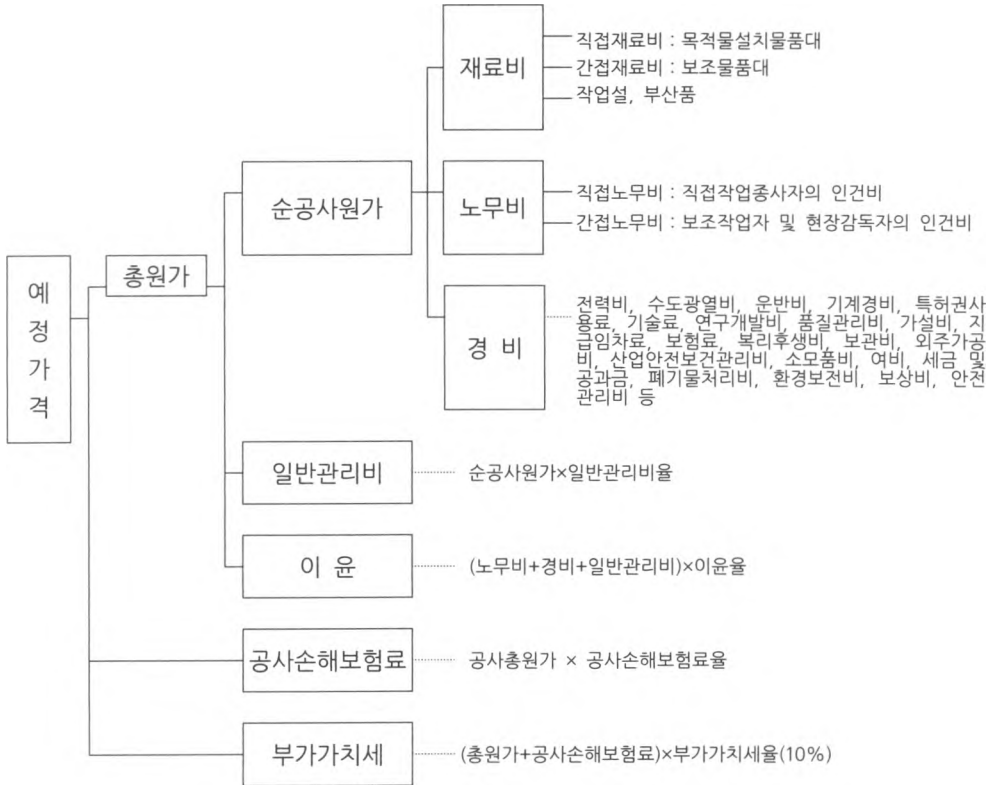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의 원가체계



4.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와 “6-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
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
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
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라.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
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4장 제1절 3.”과 “제4장 제2절 4.”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계상한다.
-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기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②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③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④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상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0억원 미만	14	
	50~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4장 제3절 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012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장 제2절 4-나-(4)”와 “제4장 제3절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4장 제2절 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원~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공 식 >

$$\text{공사손해보험료} = \text{총공사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10. 공사손해보험 가입

가.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공사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이 포함된 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다. 보험가입의 범위

“나”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 보험가입금액

-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2)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1)”의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가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1)”과 “(2)”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바.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 (1) “나”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사.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를 산정

- (1)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행정안전부 예규「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 제3절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보험료 계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차.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가입한 후에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카.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보험금의 사용

-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 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파.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내용과 같다.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4장 제4절 1-가-(2)”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과 “(3)”에 의한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건비

가. 인건비의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사의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4장 제2절 5-다-(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등

가.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와 “제4장 제4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SW사업 대가기준 가이드(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기술자 노임단가(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부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2)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고용보험료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고용보험료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폐기물처리비

- 1)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2)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환경보전비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6(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1)

품질관리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7)

감가상각비

-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2절 5-다-(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4)

안전관리비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안전관리비)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4)

공사손해보험료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4. 손해보험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1. 실적공사비의 개념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2절 4-다”와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제5장 제2절 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6”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 300억원 미만	5.5	5억원 ~ 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6.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공사손해보험료

“제4장 제3절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4장 제3절 10.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1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1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장 제2절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2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2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1. 특례설정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수의계약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계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동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를 준용한다.

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시행기준

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1절 1-다”와 “제6장제2절 1-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제3절 “2-사”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9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 교 통 비 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Δ)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상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만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1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803,744원
연구원	월 2,149,872원
연구보조원	월 1,437,119원
보조원	월 1,077,87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1년도 기준단가이며, 201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별표 3〉

원가예산용역 및 원가검토포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기술자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 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 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
(2011.04.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문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사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

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times (\text{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times (\text{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times (\text{공사비})^{-0.0386}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와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2012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별표 2] 통신부문의 효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times (\text{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times (\text{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times (\text{공사비})^{-0.0271} - 0.00262$			

-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에너지나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에너지나어링기술 중에서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설비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와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공사비 요율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이하	3.12	8.01	11.13
1억원 이하	2.91	7.46	10.37
3억원 이하	2.60	6.66	9.26
5억원 이하	2.47	6.32	8.79
10억원 이하	2.30	5.89	8.19
30억원 이하	2.05	5.26	7.31
50억원 이하	1.95	4.99	6.94
70억원 이하	1.88	4.82	6.70
100억원 이하	1.81	4.65	6.46
300억원 이하	1.62	4.16	5.78
500억원 이하	1.54	3.94	5.48
700억원 이하	1.49	3.81	5.30
1,000억원 이하	1.43	3.67	5.10
3,000억원 이하	1.28	3.28	4.56
5,000억원 이하	1.21	3.11	4.32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times (\text{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times (\text{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5,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공사비 요율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times (\text{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와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times \text{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times \text{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times \text{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times \text{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웅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	가. 흙깎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 량 토 공 치 환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중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 개 량 반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중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복 잡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복 잡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표 계속〉

공 중	세 부 사 항	난이도
구조물공 (공동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중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중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사. 웅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배수공	자. 기 타 ① 맨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선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불력 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슬플레이트와 워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썬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 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불력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교량공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속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명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중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경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가시설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아음부 연결상태(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c 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채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결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가도	라. 가도 및 가울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상하수 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중·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양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78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제13조의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비 요율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times (\text{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times (\text{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times (\text{공사비})^{-0.0386}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도
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와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통신부문의 효율

요율 공사비	업무별 효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times (\text{공사비}) - 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times (\text{공사비}) - 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times (\text{공사비}) - 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와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효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14.54
1억원 이하	2.91	7.46	13.59
2억원 이하	2.76	7.06	12.60
3억원 이하	2.60	6.66	11.59
5억원 이하	2.47	6.32	10.93
10억원 이하	2.30	5.89	10.07
20억원 이하	2.18	5.58	9.54
30억원 이하	2.05	5.26	8.98
50억원 이하	1.95	4.99	8.58
100억원 이하	1.81	4.65	8.05
200억원 이하	1.72	4.41	7.69
300억원 이하	1.62	4.16	7.31
500억원 이하	1.54	3.94	6.99
1,000억원 이하	1.43	3.67	6.58
2,000억원 이하	1.36	3.48	6.30
3,000억원 이하	1.28	3.28	5.99
5,000억원 이하	1.21	3.11	5.73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times (\text{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times (\text{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와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0호

관보 제17814호(2012.7.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8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일부 정정

- 정정사유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중 “업무별 요율(%)”의 합계 값의 오류로 “계” 항목 정정
- 정정내용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중 “계” 항목 정정

변경전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 계	실시설 계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14.54
1억원 이하	2.91	7.46	13.59
2억원 이하	2.76	7.06	12.60
3억원 이하	2.60	6.66	11.59
5억원 이하	2.47	6.32	10.93
10억원 이하	2.30	5.89	10.07
20억원 이하	2.18	5.58	9.54
30억원 이하	2.05	5.26	8.98
50억원 이하	1.95	4.99	8.58
100억원 이하	1.81	4.65	8.05
200억원 이하	1.72	4.41	7.69
300억원 이하	1.62	4.16	7.31
500억원 이하	1.54	3.94	6.99
1,000억원 이하	1.43	3.67	6.58
2,000억원 이하	1.36	3.48	6.30
3,000억원 이하	1.28	3.28	5.99
5,000억원 이하	1.21	3.11	5.73
5,000억원 초과	<미하생략>		

변경후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 계	실시설 계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11.13
1억원 이하	2.91	7.46	10.37
2억원 이하	2.76	7.06	9.82
3억원 이하	2.60	6.66	9.26
5억원 이하	2.47	6.32	8.79
10억원 이하	2.30	5.89	8.19
20억원 이하	2.18	5.58	7.76
30억원 이하	2.05	5.26	7.31
50억원 이하	1.95	4.99	6.94
100억원 이하	1.81	4.65	6.46
200억원 이하	1.72	4.41	6.13
300억원 이하	1.62	4.16	5.78
500억원 이하	1.54	3.94	5.48
1,000억원 이하	1.43	3.67	5.10
2,000억원 이하	1.36	3.48	4.84
3,000억원 이하	1.28	3.28	4.56
5,000억원 이하	1.21	3.11	4.32
5,000억원 초과	<현행과 같음>		

정정사유

업무별요율(%) 의 계 항목 오류 정정

4. 계약심사관련 추천 사이트

추천사이트	주 소	내 용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노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확인 가능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서울시계약심사 동아리	http://cafe.daum.net/geyaksimsa/	서울시 계약심사 사례 각종 원가심사관련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주)	http://www.smbs.biz/index.jsp	주요 통화기준율 확인
환경부	http://www.me.go.kr/ · 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
한국건설 자원협회	http://www.koras.org/etc/transport.html	품목별 건설폐기물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사)한국원가 관리협회	http://www.kcaa.or.kr/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표준품셈 등), 건설기계 기계경비 산출표 등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업경영분석자료- 업종별 자기자본비용, 유동비용, 이익(윤)율 등

